

2022-11-18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안내

고객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 19-48 호)의 개정에 따라서 2022 년 12 월 1 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이에 안내드립니다.

### 1. 이번 제도로 인해서 영향받는 선적 유형

타 선사의 컨테이너로 수입된 이후, 그 제품을 그대로 머스크/씨랜드의 컨테이너로 적입하여 머스크/씨랜드 부킹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환적 건이 대상입니다. (통상 내품 T/S 라 부르는 건)

- 1) 함부르크 수드-머스크/머스크-함부르크 수드 또는 CMA-머스크/머스크-CMA 같은 시나리오가 대상
- 2) 컨테이너의 적출입이 없는 머스크 - 씨랜드 / 씨랜드 - 머스크 간 환적화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컨테이너의 적출입이 일어나면 대상이 됩니다.

### 2. 변경되는 세관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

1 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적신고가 수출로 선적되는 선사의 공 컨테이너에 적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하증권 당 최대 200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시행일

**2022 년 12 월 1 일**

과태료는 2023 년 3 월 1 일 신고건 부터 적용 (3 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

### 4. 관련 법규

환적물품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중 제 6 조 (환적신고 등)

- 1항. 법 제 141 조제 3 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 164 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 1 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 후 적입작업을 하기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Q&A

#### Q1. 화주는 환적화물임을 선사에게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A1. 부킹 시점에 환적화물이고, 언제 컨테이너 대 컨테이너로 환적 작업하실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Q2. 환적신고를 이행해야하는 자는 누구인가?**

A2. . Simple bill(하우스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선사에서 진행, 하우스가 있는 경우는 해당 하우스 신고를 하는 포워딩에서 진행합니다.

선사는 고객이 환적신고를 한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환적신고를 한다고 선사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출 선사는 고객님의 주신 환적 정보를 바탕으로 UNIPASS 상에 환적신고를 진행합니다. 결국 화주/포워딩에서 미리 선사에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환적신고 건을 선사에 사전에 통보를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적신고를 누락할 경우 하우스 신고 건의 경우 그 과태료를 하우스를 신고하는 포워딩에, 하우스가 없는 마스터 신고 건의 경우 그 과태료를 선사에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폐사에서는 환적신고 여부를 선사에 부킹 당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기타 책임은 고객님께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킹 당시에 폐사에 통보하는 방법은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 전에 전체 공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3. 세관은 확인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를 "수출로 선적되는 선사의 컨테이너 반입 시점"으로 판별하는가?**

A3. 현재 시점에서 세관의 경우 UNIPASS 상에서 "환적신고(적입)"으로 기재된 일자를 "수출로 선적되는 선사의 컨테이너 반입 시점"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Q4. 그러면 머스크는 언제 수출용 컨테이너로 적입되었다고 간주할 것인가?**

A4. 해당 부킹 상의 컨테이너가 터미널 및 장치장에서 공 컨테이너 반출일자를 수출용 컨테이너 적입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유는 보세장치장에서 타선사로 수입한 수입 컨테이너에서 반출한 내품을 언제 실제 폐사의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UNIPASS 상에서는 "환적신고(적입)"과 "출항적하목록 제출일" 사이의 어느 날에 실제 화물의 반출/적입 작업이 있었어도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사에서는 별도의 검증 방법이 없어서 세관에서 준 기준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공 컨테이너 반출일이 UNIPASS 상 환적신고(적입) 일자 보다 이후 일정일 경우에 적입작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로 환적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미리 반출해가야만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건의 과태료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환적신고를 이행하는 선사/포워딩에 해당 청구서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과태료가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의 우려도 있어서 선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소극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추후 관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5. 환적신고 준비시의 유의점이 있는가?**

A5. 현재 관련 법령 상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환적신고는 분할 신고 및 정정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2) 분할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적화물의 적출입 작업 시에, 복수의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 중 일부는 머스크를 이용하고, 일부는 다른 선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된 MRN 으로 세관시스템 상 표기 되기 때문입니다.
- (3) 분할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된 MRN 으로 수출 여러건에 나눠서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용된 MRN 으로 세관시스템 상 표기 되기 때문입니다.
- (4) 분할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된 MRN 으로 다른 지역으로 수출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용된 MRN 으로 세관시스템 상 표기 되기 때문입니다.
- (5) 환적신고는 전산으로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모션으로 진행한 내역 중 MRN / MSN / 선하증권 번호 / Type / 품명 / 수량 / 중량 정보를 수기로 제공해주셔야 하고, 수출 시에 선적할 선하증권 번호 / Place of Discharge / 컨테이너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6. 참고자료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계획서](#)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신규조문대비표](#)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전문](#)

당 건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사의 고객센터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팀과 머스크는 언제나 고객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에 적극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크

2022-11-18

## **Transshipment cargo manifest regulation change in South Korea**

Dear Valued Customer,

According to revision of "Special notice regarding Transshipment cargo manifest procedure, Korea Customs notice 19-48". The new amendment applies to all transshipment cargo at South Korea from 1<sup>st</sup>, December 2022.

### **1. Affected shipments scenario**

Any container imported the carrier service, the cargo arranges devanning from import container to arrange stuffing export carrier container to use export service by another carrier.

- 1) If import arranged by Hamburg Sud, but export arranged by Maersk. This rule will be applicable.
- 2) Between Maersk-Sealand Asia or Sealand Asia-Maersk service which does not have container devanning and stuffing to the other container. Then this rule will not be applicable.

### **2. What is the change?**

If any shipment applies this rule, the transshipment manifest declaration must be made prior to stuffing into the export carrier's container.

If any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violate this rule, charge penalty maximum KRW 2 million per bill.

### **3. Go-live by customs**

1<sup>st</sup>, December 2022

The penalty applies from 1<sup>st</sup>, March 2023. (Grant 3 months grace period)

### **4. The underlying law**

Art.6 the special notice on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he transshipment goods (transshipment report, etc.)

"According to Customs law Art. 141 paragraph 3 and Customs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 164, anyone intends to transfer goods along with container devanning and stuffing to other container, **he/she shall submit a transshipment report before arrange cargo stuffing into export container** in attached form 1 stating the details of the devanning and stuffing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in charge of the container devanning/loading area. "

### **5. Q&A**

#### **Q1. When do customer(shipper/freight forwarder) notice this cargo is transshipment cargo to Maersk?**

A1. Please inform the transshipment cargo at booking stage and also inform the date when you arrange the cargo devanning and stuffing.

#### **Q2. Who do the transshipment manifest declaration?**

A2. . Simple bill – Export carrier / House bill – Freight forwarding who issue house bill.

Carrier cannot know which shipment is transshipment cargo without customer's notification. Export carrier arranges transshipment manifest declaration refer to customer's notice and information.

Unfortunately, Customs system is unable to notice which shipment is transshipment. However, if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may not arrange declaration as deadline on customs enforcement ordinance, then customs will charge penalty to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Hence, if customer may not inform transshipment cargo at booking stage, we will ask your responsibility regarding all customs penalty including fines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How customer notice the transshipment at booking stage that solution is under discussion, we will inform you accordingly.

**Q3. How does Korea customs know the transshipment cargo and when is the date for "container stuffing date for export"?**

A3. As of now, customs considers the date listed as "Transshipment declaration(Entry)/환적신고(적입)" on UNIPASS is the date of "container stuffing date for export".

**Q4. When Maersk consider the cargo stuffing date for export?**

A4. We consider empty container pick up date from CY/Depot as "container stuffing date for export".

Reason is, Maersk do not have visibility regarding when shipper or freight forwarder arrange an import container by the other carrier transfer to bonded area. As of now any customs system do not give visibility regarding when the cargo devanning and stuffing. Hence, we can't know the stuffing into export container arranged as legally approved date and procedure.

Another reason is as explained in A2, any customs penalty may occur due to violation of this regulation, customs charge the penalty to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And may occur this penalty case several times that may bring the business suspension risk.

In future, Korea customs may provide more clear guidance regarding the "date" visibility and definition, this requirement will be also updated.

**Q5. Before arrange transshipment manifest, do we need anything consideration?**

A5. According to the notice, please consider below before arrange transshipment.

(1) Transshipment manifest is not able to bill split/amendment.

(2) Split infeasible means, if import shipment arranged in single MRN with multiple containers, some containers arrange export service by Maersk, some others arrange by other carrier that is not acceptable.

(3) Split infeasible means, unable to arrange import shipments to multiple export shipments.

(4) Split infeasible means, unable to arrange export to different countries

(5) Transshipment manifest declaration is not arranged by E-solution. Means, customer must inform below manually.

Import MRN, Import MSN, Import bill of lading number / Manifest type / Commodity / Quantity / Weight.

Export bill of lading number / Place of Discharge / Export Container number

Should you have any concerns and/or que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ur local Maersk representativ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Yours sincerely,  
Maersk